

# 정기주주총회 의사록

[제9기]

2024년 05월 31일

| 의안 번호    | 의안(보고)명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호 보고   | 제 9 기 감사 보고의 건               |
| 제2호 보고   | 제 9 기 영업 보고의 건               |
| 제1호 의안   | 제 9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     |
| 제2호 의안   | 제 9 기 현금 배당의 건               |
| 제3-1호 의안 | [안건철회]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-2호 의안 | [특별결의] 정관(제16조 및 제54조) 변경의 건 |
| 제4호 의안   | 차입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         |
| 제5호 의안   | [특별결의]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|
| 제6호 의안   | 자산관리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           |
| 제7호 의안   | 사업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         |
| 제8호 의안   | [특별결의] 이지스25호펀드 추가 투자 결정의 건  |
| 제9호 의안   | 이사(기타비상무이사) 선임의 건            |
| 제10호 의안  | 제 10 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         |
| 제11호 의안  | 제 10 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         |

(주)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2024년 05월 31일 (금) 오전 10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, 14층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(여의도동, 센터빌딩)에서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(이하 “회사”)의 제9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다.

|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주주총수   | 7,168 명 | 주식 총수 | 51,443,469 주 |
| 출석주주총수 | 97 명    | 출석주식수 | 24,738,300 주 |

본 회의의 의장인 대표이사 도병운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말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#### 제1호 보고: 제 9 기 감사 보고의 건

의장은 감사로 하여금 회의자료로 첨부한 제9기 감사보고를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치다.

#### 제2호 보고: 제 9 기 영업 보고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회의자료로 첨부한 제9기 영업보고를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치다.

#### 제1호 의안: 제 9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회사의 제9기 재무제표를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은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제9기 재무제표를 승인한다.

#### 제2호 의안: 제 9 기 현금 배당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하기 승인사항과 같이 회사의 제9기 현금 배당을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

다.

☐ 승인 사항

: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9기 현금 배당을 승인한다.

|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 9(당)기      | 2023 년 09 월 01 일부터 | 제 8(전)기 | 2023 년 03 월 01 일부터 |
|              | 2024 년 02 월 29 일까지 |         | 2023 년 08 월 31 일까지 |
| 처분예정일        | 2024 년 5 월 31 일    | 처분확정일   | 2023 년 11 월 29 일   |

(단위: 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| 당 기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전 기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I.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|                 | 188,291,161,902  |                 | 164,630,226,233  |
| -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| 156,741,326,000 |                  | 125,799,633,000 |                  |
| - 당기순이익           | 31,549,835,902  |                  | 30,830,593,233  |                  |
| II. 이익잉여금이입액(주 1) |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0,449,685,921   |
| - 주식발행초과금         | -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0,449,685,921  |                  |
| III.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|                 | (10,839,413,902) |                 | (10,338,586,154) |
| - 연차배당(주 2)       | 10,839,413,902  |                  | 10,338,586,154  |                  |
| IV.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|                 | 177,451,748,000  |                 | 156,741,326,000  |

\* 제 9 기 배당금 총액: 10,839,413,902 원 (주당 약 210.70 원), 배당 기준일 : 2024 년 2 월 29 일, 배당 기준 주식수 : 보통주 51,443,469 주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제9기 현금배당을 승인한다.

제3-1호 의안: [안전철회]

의장은 당해 안전([특별결의] 정관(제5조) 변경의 건)이 2024년 05월 30일 이사회 의사결정에 따라 안전 철회된 사실을 주주에게 공지하고 금번 주주총회에서 당해 안전에 대해 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하다.

제3-2호 의안: [특별결의] 정관(제16조 및 제54조) 변경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정관(제16조 및 제54조) 변경안을 하기 승인 사항과 같이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☐ 승인 사항

: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제도의 도입에 따른 배당 기준일 설정 조항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변경대비표와 같이 정관 변경을 승인한다.

| 조항   | 상세  |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 | 기준일 | <p>제 16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5일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/p> <p>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가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 16 조 (기준일)</p> <p><u>(삭제)</u></p> <p>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가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<b>[변경 사유]</b></p> <p>- 상장사 주식 전자등록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일 설정 필요성 상실로 인한 조항 삭제</p> |

|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4조 | 이익배당의 지급 | <p>제 54 조 (이익배당의 지급)</p> <p>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 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②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또는 차입을 위한 대출약정상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제 54 조 (이익배당의 지급)</p> <p>① <u>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또는 차입을 위한 대출약정상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<b>[변경 사유]</b></p> <p>-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제도의 도입에 따른 배당 기준일 설정 조항 변경</p> |
| 부칙   | (신설)     | <p>(신설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부 칙 &lt;2024. 5. 31. 개정&gt;</p> <p>제 1 조 (시행일)</p> <p>이 정관은 2024년 5월 31일(단, 정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가 필요한 조항에 한하여 2024년 5월 31일 또는 해당 변경인가를 득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)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[변경 사유]</b></p> <p>- 정관 개정에 따라 부칙 추가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이에 출석한 주주들은 회의자료 등을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정관 변경의 건을 승인한다.

#### 제4호 의안: 차입계획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당 차입계획을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은 회의자료 등을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차입계획을 승인한다.

#### 제5호 의안: [특별결의] 사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사채 발행계획을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이에 출석한 주주들은 회의자료 등을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사채 발행계획을 승인한다.

#### 제6호 의안: 자산관리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자산관리계약변경계약 내용을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은 회의자료 등을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자산관리계약 변경계약 체결을 승인한다.

#### 제7호 의안: 사업계획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사업계획의

내용을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은 회의자료 등을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한다.

#### 제8호 의안: [특별결의] 이지스25호펀드 추가 투자 결정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이지스25호펀드 추가투자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이에 출석한 주주들은 회의자료 등을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이지스25호펀드 추가 투자 결정을 승인한다.

#### 제9호 의안: 이사(기타비상무이사) 선임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이사(기타비상무이사) 선임과 관련하여 승인 사항과 같이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##### ☐ 승인 사항

: 다음의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고자 함

1. 후보자 성명/생년월일/사외이사 여부/최대주주와의 관계/추천인/제납사실 여부/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/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

| 성명  | 생년월일       |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추천인 | 제납사실 여부 |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|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이성중 | 1969.02.06 |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 | 해당없음      | 이사회 | 해당없음    | 해당없음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|

2. 후보자 주된 직업/세부 경력/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

| 성명  | 주된 직업 | 주요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이성중 | 기업인   | 1. 롯데그룹 근무: 1992.10.26부터 현재까지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2. 롯데건설 근무: 2003.01.01부터 현재까지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이에 출석 주주들은 회의자료를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이성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(기타비상무이사) 선임을 승인한다.

#### 제10호 의안: 제 10 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회사의 제10 기 이사 보수를 승인 사항과 같이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☐ 승인 사항

: 다음과 같이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함

| 구분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사의 수         | 대표이사(사내이사) 1인<br>기타비상무이사(사외이사) 3인(*)         |
|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| 대표이사: 보수 없음<br>기타비상무이사: 600만원 (월 100만원) (**) |

(\*) 기타비상무이사(사외이사)의 수는 주주총회 당일(2024.05.31) 폐회 후 사임한 기타비상무이사 1인(류규태)를 포함하여 3인임

(\*\*) 주주총회 당일(2024.05.31) 사임한 기타비상무이사 1인(류규태)를 제외한 기타비상무이사 2인 중 1인 무보수

이에 출석 주주들은 회의자료를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제 10 기 이사 보수를 승인한다.

#### 제11호 의안: 제 10 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주주에게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하여 회사의 제10 기 감사 보수를 승인 사항과 같이 설명하게 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☐ 승인 사항

: 다음과 같이 감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함

| 구분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감사의 수         | 감사 1인            |
|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| 총 180만원 (월 30만원) |

이에 출석 주주들은 회의자료를 검토한 후,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제 10 기 감사 보수를 승인한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
(폐회: 오전 10시 30분)

위 의사의 안전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 날인하다.



2024 년 05 월 31 일

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14층 (영등포동, 세우빌딩)  
의장, 대표이사 도 병 훈

